

성인학습지원센터 규정

(제정 2019. 12. 20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성인학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성인학습자의 기초학습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2. 성인학습자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및 개인학업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
3. 성인학습자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4. 성인학습자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
5. 그 밖에 성인학습자 지원에 관한 사항

제2장 조직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연구 및 행정인력)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, 행정직원, 조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설치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교육과정평가센터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, 진로개발센터장, 카운슬링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미래융합대학 행정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성인학습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
2. 성인학습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3. 센터 업무의 성과분석 및 평가

4. 그 밖에 성인학습에 관한 사항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4장 환류

제9조(환류) ① 센터장은 매 학년도 말에 종합계획의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개선방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, 다음 학년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